「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개정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중국, 동남아등으로부터의 저가, 저품질 공산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안전관리제도혁신의 필요에 따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05년 12월 23일(법률 제7742호)에 동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동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안전검사, 안전검정, 품질표시가 각각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 및 품질 표시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기존에 자율 사항이었던 안전검정과 품질표시가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

자동차타이어는 기존에 안전검정 품목이었다가 금번 개편된 자율안전확인 품목으로 분류되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공인기관의 시험·검사 후 안전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산자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판품 조사를 통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품들은 리콜 조치 및 벌칙이 부과된다. 현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이 새롭게 마련중이며, 06년 12월 24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 안전관리대상 공산품 관리제도 주요 개편 내용 〉

종전	개정	대상품목(안)
안전검사(의무)	안전인증(의무)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등 33 품목
안전검정(임의)	자율안전확인(의무)	자동차타이어 등 42 품목
품질표시(임의)	안전·품질표시(의무)	의류, 화장지 등 28 품목
-	법정외 품목 조치(신설)	(위해제품 발견, 피해 확산 우려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부 공고 제 2006-159호' 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한다는 입법예고를 지난 5월 2일 공고했다. 동 법률 개정(안)에서는 자동차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저해 및 저질부품의 제작,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리콜 시행 전에 해당 결함을 소유자 부담으로 정비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토록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가.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장치의 구조 등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 및 기준 (부품안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안 제 30조의 4 신설]

나. 부품 등에 대해 자기인증토록 하고, 결함발생시에는 제작자등이 결함을 시정토록하며, 사후관리를 위해 교환용 부품 및 장치의 제작자 등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토록함 안 제 30조의 5 신설]

다. 리콜 시행 전에 소유자 부담으로 결함을 소유자 부담으로 정비한 경우 소유자가 제작사에게 사전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 31조 제 5항 신설]

라. 부품의 경우에도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벌칙을 준용 [안 제 74조 제2항, 안 제 78조 제1호, 안 제 81조]

타이어 부문에 있어서는 유럽 ECE Regulation이 적용되므로 국내타이어 3사 모두 유럽 인증을 기획득 하였고, 자

동차용 타이어 한국산업규격(KS)도 국제수준으로 상향 개정하였으므로 향후 개정된 법률안이 입법화 되어 개정된 안전기준이 채택되더라도 우리업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 개정 법률이 입법화되기까지는 향후 자동차 각 부품업체와 정부간 의견조율의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EU, UN국제규격 도입으로 재생타이어 수출 쉬워져

■ EU 이사회, 재생타이어 국제규격 따르기로 결정

EU 이사회는 재생타이어 규격과 관련, UN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규격을 그대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EU는 EU 지침의 대체 규격으로 UNECE 기술 규격을 간주해 왔는데 이같이 국제규격을 그대로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EU가 향후에도 기술규격 관련하여 국제규격과 점차 호환성을 갖으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결정이다.

특히 자동차 관련, 독자적인 규격을 수립해 적용하고 있는 EU는 글로벌 경제속에서 유럽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하는 동시에 교역장벽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동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EU의 독자적 규정은 EU업계가 역내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EU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해야하고 역외시장 판매하기 위해서는 EU 규격과 다른 국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등 이중 부담을 주기 때문에 결국 유럽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외업체에게는 EU 시장 진출의 기술적 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시장반응 및 향후 시장변화 전망

EU의 이같은 결정은 재생타이어에 신규 타이어와 유사한 안전과 품질 규정을 도입함 으로써 재생타이어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지금까지 유럽에서는 대부분 소각되던 폐타이어를 재생,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환경에도 유리한 규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승용차용 타이어의 경우 지금까지 유럽에서는 재생 타이어 사용이 극히 미미한 실정인데 동 규정의적용으로 앞으로 재생타이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상당히 바뀔 전망이다.

■ 시사점

지금부터 EU시장에서 판매되는 재생타이어는 UNECE 규격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우리 기업의 대 EU수출조건 역시 동 규격을 준수하면 가능하다. 따라서 장벽으로 작용했던 EU 규격이 제거됨에 따라 우리 재생 타이어의 대 EU 수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KOTRA 브뤼셀 무역관, 06.5.2〉